

경기규칙 개정 관련 이의제기

아래의 내용은 남구테니스협회의 행정력 부재로 인하여 발생한 문제들로 모든 책임은 남구테니스협회에 있으며, 남구테니스협회의 발전을 바라는 단위클럽(유성클럽)의 자격으로 공식적인 이의제기를 하는 것임을 밝힙니다.

1. 배경

- 클럽간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 출전선수 자격과 관련한 경기규칙 개정과 관련하여 모든 클럽을 대상으로 충분한 의견수렴을 거치지 않았고, 예정에도 없이 즉석에서 발의된 안건을 임시이사회에서 의결처리함.

2. 추진경과

- 2016. 9. 27. 임시이사회 개최 공지(남구테니스협회 사무국장)
 - ※ 3복식 예선리그시 순위결정전에 합리적인 수정 토의건이라고 안내(남구테니스협회 경기위원장)
- 2016. 10. 4. 사전 안내와 충분한 의견수렴도 없이 출전선수 자격에 대해 임시이사회에서 개정함
- 2016. 10. 7. 경기규칙 공포(남구테니스협회 사무국장)

현행	개정(안)	의결사항/시행
제5조(출전선수 자격) 3.남자 나. 만 40세 이상 일반지도자 및 만 45세 이상 선수출신자 는 금배부 출전 가능하나 서로 간 파트너 불가하며, 단위클럽별 1명으로 제한한다.	제5조(출전선수 자격) 3.남자 나. 만 45세 이상 일반지도자 및 만 50세 이상 선수출신자 는 금배부 출전 가능하나 서로 간 파트너 불가하며, 단위클럽별 1명으로 제한한다.	가결 시행:2017년 01월01일부터 시행한다

3. 요구사항

- 출전선수 자격과 관련한 경기규칙 개정은 하자가 있는 개정임으로 원천 무효이며, 일정기간 모든 클럽의 의견수렴을 거치는 등 원점에서 재논의
- 이해관계가 얽혀있는 중요한 경기규칙의 개정시 각 클럽에 충분한 의견수렴을 거친 후 정기총회에서 개정하는 등 민주적인 의사결정 제도 확립을 위해 정관을 개정하여 이사회 개최 관련한 내용을 명문화
 - 이사회 개최 절차예시
 - 개정(안) 발의[배경 및 문제점, 목적, 개정(안)(제1안, 제2안), 기대효과 등 명시]
⇒ 협회차원의 개정 필요성 등 검토 ⇒ 모든 클럽을 대상으로 개정(안)에 대한 15일 이상 온라인 의견수렴 ⇒ 관련 개정안에 대한 정기총회 개최 고지 ⇒ 정기총회 개최 ⇒ 결과 공지

※ 부산시거주자만 출전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는 남구테니스협회 경기규칙을 남구 클럽대회 하루전 “기존 남구를 주소지로 하였던 회원 중 타 시도 진출 회원은 출전가능”하도록 개정한 바 있음(2014. 5. 17)